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고령군수

1.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6. 19. ~ 2026. 7.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 번	대상자	주 소	세 목	과세예고액	송달불능 사유	반송일자
1	유*자	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길 1*-*	취득세 (부동산)	622,180원 (2026.7.10.기준)	폐문부재	2026. 6. 8.
2	유*연	경북 경산시 장산로1길 **, 1**동 ***호	취득세 (부동산)	622,180원 (2026.7.10.기준)	폐문부재	2026. 6. 12.
3	황*숙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길 1*-1*	취득세 (부동산)	763,270원 (2026.7.10.기준)	폐문부재	2026. 6. 12.
4	여*기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길, *동, ***호	취득세 (부동산)	4,593,280 (2026.7.10.기준)	폐문부재	2026. 6. 12.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하시거나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 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